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5,500,000	18,765,000
일반회계	542,400,000	16,272,000
특별회계	83,100,000	2,493,000
공기업특별회계	29,800,000	894,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300,000	489,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500,000	405,000
기타특별회계	53,300,000	1,59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600,000	108,0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610,000	78,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40,000	22,2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00,000	66,000
주택사업특별회계	760,000	22,8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60,000	4,8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000	6,000
치수사업특별회계	5,760,000	172,8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700,000	111,000
대지보상특별회계	550,000	16,5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0,000	60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2,000,000	660,0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000,000	33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71,25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